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술성 평가로 대체 >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73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술성 평가로 대체(안 제12조의3)	2

※ 참고자료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 평가 설명자료	8
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4. 6. 10.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술성 평가로 대체(안 제12조의3)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술성 평가로 대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제12조의3(기술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1) 개정안이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69호)**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²⁾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

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이하 ‘예타 대상선정’이라 함)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을 수행하고, 평가결과가 “적합”인 사업³⁾에 대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의 3⁴⁾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⁵⁾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4. 국고 지원의 적합성
5. 삭제
6. 삭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최근 3년(2022~202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7건의 사업에 대해서 예타 대상선정을 수행하였고, 이 중 29개의 연구개발사업이 대상선정 결과 “적합”이었음.

4) 「국가재정법」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참고로, 기술성평가 제도 자체는 2011년 3월에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2018년 1월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평균 3년⁶⁾ 이상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연구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바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성 평가제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는 제도의 취지와 평가 항목 등 상이한 부분이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술성 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원화하여 운영 중임.

6)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산출하면 **평균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7월말 조사 종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130개의 사업을 대상을 산정한 것임. 산출 방법은 예타요구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종료일까지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신규요구 및 재요구를 동일하게 1건으로 처리함.

7)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4.25.)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 평가(예타 대상선정)
목적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강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술성을 평가하여 예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 여부 결정
평가 항목	기술적 타당성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4. 국고지원의 적합성·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 여부, 자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
	정책적 타당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 -지역 낙후도와 같은 특수평가항목	
	경제적 타당성	-사업비 및 비용 추정 -비용편익 분석/비용효과 분석	
소요시간	약 3년 (예비타당성조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산출하면 평균 8개월임)		약 1.5개월~2개월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 항목을 비교해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항목과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일부가 기술성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나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같은 주로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경우는 기술성 평가 항목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술성 평가로 대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은 있겠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소나 정책

의 일관성과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제외되어 한정된 재정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배분적 효율성은 저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둘째, 현행법상 예비타당성조사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⁹⁾ 개정안은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음.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보다는 완화된 신속한 절차로 기술성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이므로, 완화된 절차인 기술성 평가도 그 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9

8) 참고로,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4.6.4)에서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발표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의결한바 있음.

이에 따르면, 1천억원 이상의 연구형 R&D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시간 없이 신속히 추진하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①필요성 및 시급성, ②사업규모 적정성, ③추진내용 구체성, ④유사중복 여부 등의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검토(10월~3월)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획 중임.

9)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도입 취지

- 과기정통부로 R&D 예타 업무를 위탁하기 이전, 예타를 신청한 R&D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여 **예타대상 적합 여부**를 기재부에 제시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위한 의견 제출)

* 과기정통부의 과학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검토

- 기재부는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인 사업 중에서 **예타대상 사업을 선정**

□ 경 과

- 기술성 평가 도입('11.3월, 국과위)
-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R&D 예타** 업무를 위탁하며 기술성 평가를 R&D 예타 대상선정 절차와 **일원화**하여 운영 中('18.4월~)

□ R&D 예타 대상선정 절차 주요내용

- **(대상)** 예타를 신청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 **(평가기준)**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 **4개 항목 기준 검토**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 **(추진체계)** 평가 기준에 따라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에서 신청 사업을 검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통해 **예타 대상 확정**

* R&D 예타와 관련된 중요사항(예타 대상선정, 조사 결과, 제도 운용 등)의 심의·조정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소속 위원회

I. 추진 배경

- R&D 투자의 적시성·신속성 회복을 위해 2024 국가재정전략 회의(5.17.)에서 발표한 R&D 예타 제도 폐지의 후속방안 마련

II. 주요 내용

- ◆ (기본 방향)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원칙적인 폐지를 추진하고 R&D 신속성 강화
- (보완방향) 1천억원 이상 대규모 R&D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부실화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별도 보완절차 마련

① (연구형R&D)신속하면서도 건전한 연구개발 추진

- 연구형R&D는 추가 소요기간 없이 신속히 추진하되, 기획완성도 제고 및 효율적 예산심의를 위해 필수항목* 중심의 전문검토 실시(10~3월)
- * ①필요성 및 시급성, ②사업규모 적정성, ③추진내용 구체성, ④유사중복 여부 등

② (시설장비/체계개발)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체계 도입

- 시설장비/체계개발은 선행기술개발을 분리*하고 사업유형 및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검증 제도 도입
- * 대형 연구시설구축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연구형R&D로 先 추진

사업유형	특징	제도 적용방안	검증결과
장비도입 등	선행기술 불필요, 관리단순	1단계 심사	사업추진여부 결정 (예산반영)
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	선행기술 필요, 관리복잡	2단계 심사	1단계 : 구축여부 결정 2단계 : 사업추진여부 결정(예산반영)

※ 연구동 건립 등 일반건축사업은 기재부 일반 예타 적용

③ 관리 및 이행방안

- (한도내 편성) 부처는 예산요구 시 모든 R&D사업을 예외없이 지출 한도 내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심의 및 사후관리 강화
- (법령개정) R&D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심사지침 제정 등 신속 추진
- (과도기 운영) 국가재정법 개정 완료 전까지는 현행 법령(예타) 체제 내에서 예타면제, 신속조사 확대 등을 통한 신속 착수 지원
- (계속사업 확대) 기존 소규모 한시사업은 통합조정을 통해 프로그램형 사업화하고, 일몰제는 폐지하여 계속사업으로 전환